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여 공탁금의 이자율을 연 1 만분의 35로 함

3. 주요내용

공탁금 이자를 '연 1천분의 1'에서 '연 1만분의 35'로 함(안 제2조)

4.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ㆍ구 조문 대비표

붙임과 같음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연 1천분의 1"을 "연 1만분의 3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u>연 1</u>	제2조(이자) <u>연 1</u>
<u>천분의 1</u> 로 한다.	<u>만분의 35</u>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880